

■ 법률 칼럼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지난 3월보다 2개월 2주가 전진하여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0년 9월8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가 2023년9월1일 이전인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3순위 전문직(숙련 포함)의 국무부 I-485 접수 가능일(우선일자)은 2023년 2월1일로 지난 3월과 같습니다. USCIS도 같은 날을 접수 가능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펴 접수일)가 2023년 2월1일 이전인 경우는 펴 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지난 3월보다 3개월 2주가 전진하여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우선일자(PERM 파일 날짜)가 2022년 11월22일 이전이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10월8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달보다 1개월이 전진했습니다. priority date(펴 접수일)가 2020년 10월8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9월8일입니다. Priority date(우선일자, 펴접수일)가 2020년 10월8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1개월 전진했습니다.

4. 취업2순위 문호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우선일자(펴접수일: priority date)가 2023년 1월15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1개월 2주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3년 1월15일로 우선일자가 2023년 1월15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1개월 2주 전진했습니다.

5. 종교이민 문호(안수직)

USCIS filing chart 상의 I-485 접수 가능일을 보면 우선일자 I-360 접수일이 2020년 11월1일 이전인 경우는 I-360 승인 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I-485 접수 가능일은 지난달에 비해 11개월 전진하였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1월1일로 11개월 이상 전진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일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성병과 족부질환

족부전문의를 찾는 환자들은 당연히 발과 발목 부위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데 의외로 만성적인 전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사실 족부과는 전신질환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진료과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발과 발목 부위를 촉진하다가 그 부위 혈관을 통해 심혈관계의 이상을 발견하면 심혈관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된다. 어떤 환자들은 어떻게 발만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놀라워하기도 하는데, 족부는 사람의 심장과 조금 떨어져 있을 뿐 신체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몸의 이상은 족부에도 나타난다. 흔하지는 않지만 성병도 진료 중에 발견된다.

족부질환 중 가장 흔하게 환자를 괴롭히는 증상은 뒤꿈치통증이다. 외상으로 인한 뒤꿈치 통증이 아니라면 대개 족저근막염을 먼저 의심할 수 있다. 흔한 발 질환인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나 발을 디었을 때 찌르르 하는 엄청난 뒤꿈치 통증이 있거나, 걷다가 잠시 쉬 후 다시 발을 떼었을 때 뒤꿈치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으로, 단순히 발 밑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 뒤 근육들과 발 밑 근육들의 불균형, 그리고 잘못된 보행 습관 등으로 인한 뒤꿈치 뼈에 붙어있는 근막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그 통증의 기전이 족저근막염이 아닌 반응성 관절염과 연관된 라이터신드롬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라이터신드롬의 경우 대개 성 접촉에 의한 전염, 급성 전염성 설사, 식중독 등과 촉발되어 눈과 생식기 및 입 속 염증도 흔히 동반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에는 라이터신드롬에 걸리면 "볼 수 없고(눈의 질환), 소변을 볼 수 없고(생식기 이상), 나무에 오를 수 없다(뒤꿈치 통증)"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라이터신드롬의 가장 흔한 발병 원인인 박테리아는 성적인 접촉으로 인해 전염되는 클라

미디아라는 종이다. 눈과 생식기 및 발 뒤꿈치에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씩 번갈아가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자가진단이 어렵고 의사도 확진을 위해서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족부에 피부질환으로 나타나는 성병으로는 매독이 있다. 매독은 1차, 2차에 이어 휴지기를 지난 후 3차로 진행되는데 현대에 와서는 3차 매독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없을 만큼 치료가 빠르고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1차 매독은 성 접촉 후 3주 후에 생식기에 궤양이 생기지만 통증이 없고 5일 만에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병이 나왔다고 오해하며 병을 키우게 된다. 2차 매독에서 가장 큰 증상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생기는 검은 반점들이다. 족부의 발바닥에서 의심스러운 검은 반점들을 발견하면 손바닥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생식기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합혈을 비롯한 뉴욕 인근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질환들도 성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드물지 않게 경험하였다. 관절염의 경우도 성병으로 인한 발병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족부와 의사들이 환자의 개인적인 성관계에 관련된 문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꽤 많은 환자들이 당황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장원호 발전문 병원
Ryan Chang, DPM
(949) 484-4405
62 Corporate Park #235
Irvine, CA 92606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